

「한국도핑방지규정」 일부 개정안

□ 개정사유

- 세계도핑방지규약 각 조항에 부합하도록 한국도핑방지규정 오역 정정 및 자구 수정으로 규정 해석 시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자구 수정으로 규정 해석 시 이해의 명확화(안 제32조, 제33조)
- 은퇴 선수의 경기복귀 시 기간 산정 오역 정정(안 제34조)

- 붙임 1. 「한국도핑방지규정」 일부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2. 「한국도핑방지규정」 일부개정안 전문(별첨)

「한국도핑방지규정」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검사대상명부)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「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」 및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, 소재지정보를 제공하고 제13조 제4호 위반 시 제66조 제2호에 따른 결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선수들에 관한 검사대상명부(Registered Testing Pool, RTP)를 작성한다.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과 해당 선수의 신원과 소재지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상호 조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⑨ (생략)</p>	<p>제32조(검사대상명부) ① ----- -----, <u>검사대상명부(Registered Testing Pool, RTP)</u>를 작성한다. <u>검사대상명부에 등재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, 제13조 제4호를 위반할 경우 제66조 제2호에 따른 결과조치의 대상이 된다.</u> -----.</p> <p>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검사대상후보명부)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「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」과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, <u>소재지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제4항에 따른 결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선수에 관한 검사대상후보명부(Testing Pool, TP)를 작성한다.</u> <u>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된 선수에게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보다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기준을 적용한다.</u>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과 해당 선수의 신원 및 소재지정보의 수집을 상호 조율한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33조(검사대상후보명부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32조의 검사대상명부에 해당하는 선수보다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기준을 적용하는 검사대상후보명부(Testing Pool, TP)를 작성한다.</u> <u>검사대상후보명부에 등재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제4항에 따른 결과조치의 대상이 된다.</u> -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제34조(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)

- ① (생략)
- ②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은퇴하는 경우,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한 도핑방지기구에 서면으로 은퇴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은퇴한 선수가 경기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, 복귀 6개월 전 또는 은퇴일(은퇴 사실을 도핑방지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의미함)을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자격정지기간이 6개월 보다 긴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전에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통지 전에는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.

제34조(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---- 복귀 6개월 전에 국제경기연맹과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의사를 통지하여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 다만 은퇴일(은퇴 사실을 도핑방지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의미함)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자격정지기간이 6개월 보다 긴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---
-----.

부칙 <2022.3.0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